

## 복수·융합전공 및 전공심화과정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38조 및 제38조의 2에 따라 복수·융합전공 및 전공심화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28.이후, 복수·연계전공이 복수·융합전공으로 변경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제1전공’이라 함은 입학 학과(부)에서 이수하는 주전공을 말한다.
2. ‘전공심화과정’이라 함은 제1전공의 학문에 대하여 심도있는 이해를 원하는 경우 최소전공 인정학점 이상의 소정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수전공’이라 함은 제1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융합전공’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융합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구성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복수·융합전공 및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학년 2학기(2개 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②학과가 신설되는 경우 해당년도 입학자부터 신설학과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하다. (신설 2019.06.25.)

**제4조(이수)** ①복수·융합전공 및 전공심화과정의 이수를 원하는 자는 제2학년 1학기부터 선택 이수할 수 있다.

②전과(부)한 자는 입학한 전적 학과의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2.23.)

**제5조(이수범위)** 소정의 자격을 갖춘 학생은 소속 대학을 포함하여 다른 단과 대학의 전공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5년제 건축학전공, 보건의료계열(의용생체공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제외) 및 주·야간의 교차, 음악학부(성악, 기악, 작곡전공)로는 제외한다. (개정 2013.03.01., 2014.08.12., 2018.05.29.)

## 2-1-4~2 제2편 학 칙

**제6조**(신청 및 허가) ①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 학기말 소정의 신청기간에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3.)

②융합전공은 주관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칙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3.)

③제1전공 이외의 전공 및 과정을 복수로 이수하는 인원은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복수전공 사전 승인 없이 복수전공을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인정(declare) 신청을 통해 복수전공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02.23.)

**제7조**(이수학점) ①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학과 또는 전공에 필요한 최소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과목은 전공과목과 복수전공과목으로 중복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②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각 학과별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융합전공 또는 전공심화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중 입학학과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이를 융합전공 또는 전공심화과정에서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각 학과별 전공 졸업이수기준이 70학점 이상인 학과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4.08.12.)

⑤사범계학과 및 교직이수대상자는 전공심화과정을 교직이수로 대체한다. (신설 2014.08.12.)

**제8조**(이수 변경) 복수전공 이수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7.02.23.)

**제9조**(학위수여) ①복수전공 또는 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2개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②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가 졸업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증명서에 이를 표기한다.

③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복수·융합전공 이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제5조 중 건축학전공의 복수전공 교차 승인 제한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